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91

발의연월일: 2005. 10. 10.

발 의 자:양형일·염동연·강창일

박기춘 · 김영주 · 김동철

원혜영・우윤근・주승용

이정일 · 지병문 · 최규식

정두언 · 김태홍 · 강기정

이상열 · 김효석 · 노영민

최인기 · 우제항 의원

(20일)

제안이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법제명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하고, 아직도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단기의 신청기간과 홍보의 미비로 보상금 등을 신청하지 못한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함.

한편,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자들이 상이등급 판정 후에 후유증이 생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재분류신 체검사의 기회를 부여하고, 1999년부터 「의료급여법」상의 급여대상 기 준과 관계없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혜택을 받고 있는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의 제명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기간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라.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 하여금 재분류신체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3조의 제목·제1항·제2항제5호, 제4조의 제목·제1항,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항, 제17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중 "光 州民主化運動"를 "5·18민주화운동"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의료급여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제외) 이 법에 의한 관련 자 및 그 유족은 의료급여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보훈처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①보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 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시의위원회로 본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아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 관한法律

<신 설>

第8條(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 | 第8條(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 등의 支給申請은 2004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신 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료급여 선정기준 등 에 대한 적용제외) 이 법에 의 한 관련자 및 그 유족은 의료 급여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문 화재청장·통일부장관 및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 가 필요한 자의 수, 선정기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의2(재분류신체검사) ①보 상심의위원회는 기타 1급·2급 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 중 본 인의 신청에 의하여 상이등급 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신체검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